

연천군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〔 2019. 12. 31 〕 규칙 제1474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에 따라 연천군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
2.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
3.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
4. 청소년 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
5.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
6.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,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「양성평등 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,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, 연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,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위촉한다.

⑤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해촉·제척 등) 위원의 위촉·해촉 또는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「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,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.

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회의록)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안건,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의견청취)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, 전문가 또는 주민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,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9조(수당 지급 등)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「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(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.

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,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

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 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·운영된 것으로 본다.